

메리츠 마음든든 반려동물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을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그 가족에 한합니다.
- 바.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 또는 고양이(猫)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 또는 고양이(猫)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⑦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또는 고양이(猫)
 -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또는 특수한 목적의 고양이(猫)
 -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 ㉣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또는 고양이(猫)
- 사. 수의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아. 동물병원: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국내 진료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 ②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통원 또는 입원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당일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지급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또는 입원하는 경우	1일당 ()원	1일당 ()원 / 연간 ()원

【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아래의 경우는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자기부담금,

지급한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5월 1일
- 자기부담금: 3만원
- 보상비율: 70%
- 1일 보상한도: 20만원
- 연간 총보상한도: 30만원

입·통원 진료일	2025.5.1	2025.8.1.	2025.11.1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0만원	20만원	40만원
1일당 예상 치료비보험금(A)	4만9천원(*)	11만9천원(**)	20만원(***)
연간 잔여 보상한도(B)	30만원	25만1천원	13만2천원
최종 치료비보험금 (C=min(A,B))	4만9천원	11만9천원	13만2천원

(*) [(10만원 - 3만원)×70%, 20만원] 중 적은금액

(**) [(20만원 - 3만원)×70%, 20만원] 중 적은금액

(***) [(40만원 - 3만원)×70%, 20만원] 중 적은금액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면책(보상하지 않는)기간(이하 “대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 본문의 면책기간을 최대 3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⑤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⑦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 용어의 정의 】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 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쪄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동물병원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
3.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개(犬)인 경우, 반려동물의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4.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고양이(猫)인 경우, 반려동물의 비뇨기계질환, 전염성 복막염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5.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6.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7.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인공유산,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비용
 8. 종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처치에 따른 비용
 9. 미용으로 인한 비용
 10.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에 따른 비용
 11.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12.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첨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13.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14.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15. 목욕비용(약육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16.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7.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8.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19.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20.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21. 아포퀄(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22.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만 보장하며 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